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2. 6 선고 2014가합54489(본소), 2014가합54632(반소) 판결
[청구이의 · 매매대금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6. 7. 14 선고 2015나2013360(본소), 2015나2013377(반소) 판결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2. 6 선고 2014가합54489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B

변론 종결 2015. 1. 9.

판결 선고 2015. 2. 6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원고(반소피고)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4년 제95호 약속어음
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
반소 : 주위적으로,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로부터 33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의 주식, 법인도장, 법인카드를 양도하고,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. 예비적으로, 원고는 피고에게 110,000,000원 및 그 중 7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4. 4. 1.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, 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(1) 원고는 2014. 3. 6. 피고로부터 (주)C(이하 '이 사건 법인'이라 한다)의 운송면허, 등록차량(별지 목록 기재 차량) 등을 양수하였는데(이하 '이 사건 양도양수계약'이라 한다),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2. 3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한 운송면허 등 법인에 속해있는 모든 부채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. 단, 법인매매와 대표이사 승계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채 및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.

4.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인수하고, 인수가격은 1억 4,000만 원으로 한다(할부금은 원고 승계).
계약금 2,000만 원, 중도금 5,000만 원, 잔금 7,000만 원

7. 2014. 3. 1.부터 발생하는 차량의 할부금 및 기타세액은 원고가 책임진다.

9.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3대를 쌍방합의하에 2014. 11. 30.까지 임대하며, 피고는 임대차량에 발생하는 할부금, 보험료 및 기타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매매대금의 잔금 7,000만 원은 2014. 3. 30.까지 지급하기로 한다.

상기 계약을 위반할 시 위반자는 계약금의 2배를 위반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

(2)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7,3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는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. 3. 6. 피고에게 액면금 7,000만 원, 지급기일 2014. 3. 30., 발행일 2014. 3. 6.로 된 약속어음(이하 '이 사건 약속어음'이라 한다)을 발행해 주면서,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4년 제95호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'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2항에 의하면, 2014. 3. 1.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, 2014. 3. 1. 이전 발생한 미변제 채무는 ① 기업은행 대출금 5,000만 원, ② (주)블루에너지 유류대금 미지급금 16,269,600원, ③ 차량별 미납과태료 2,998,600원, ④ 미납부가세 17,661,150원 합계 86,929,350원이다.

피고가 위 86,929,35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,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은 위 금액 상당 가치의 하락이 있고,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.

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상계하면,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부인되어야 한다.

(2)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항의 의미는, 피고가 2014. 3. 1.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해당 채권자들에게 여전히 부담한다는 의미이고,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(1) 갑 제2,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의 법인의 부채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밝혀질 채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2항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양수대금을 1억 4,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, 원고가 양도양수계약 이전 발생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사이에 양수대금을 위 금액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

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2014. 3. 1. 이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(2) 갑 제5, 6, 10,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2014. 3. 1. 이전 발생한 미변제 채무는 ① 기업은행 대출금 5,000만 원, ② (주)블루에너지 유류대금 미지급금 16,269,600원, ③ 차량별 미납과태료 2,998,600원, ④ 미납부가세 17,661,150원 합계 86,929,350원인 사실, 원고가 2014. 3. 18.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미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의하면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4. 3. 18. 소멸하였다(= 70,000,000 - 86,929,350원).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(1)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이후 현재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.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. 한편,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말미에 위약금을 계약금의 2배로 정하였는데, 원고는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,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항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차량 3대의 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계약금의 2배인 4,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피고는 위 위약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7,300만 원의 반환 채무와 상계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3,3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된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3,3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여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(2) 예비적 주장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원고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7,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또한 원고는 2014. 3. 1.부터 발생한

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7항을 위반하였고, 위와 같이 제9항의 임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, 위약금 4,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피고의 위 각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, 이에 관하여 본다.

(1) 먼저,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, 현재까지 현실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원고 위 잔대금지급채무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되어 소멸된 사실은 위 2. 나.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(2) 다음으로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,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법인이 2014. 3. 3. 납부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의 일부가 연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와 같이 2014. 3. 고지된 할부금은 2014. 2.분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고, 달리 원고가 위 제7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3) 나아가,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,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하였는데, 양수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법인의 채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,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일부 차량이 캐피탈로부터 취거되기도 하였고,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버스 3대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, 버스 2대는 차주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피고로부터 양수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항에서 정한 차량 3대의 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,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성대

판사이현경

판사이광열

별지